

#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49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7. 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김포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, 운영 등 기준 마련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
- 목적조항의 관계 법령 규정 정비(안 제1조)
  -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반영 규정 삭제(안 제9조제3항)
- 나.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등 신설(안 제11조 ~ 제13조)
- 다. 그 밖에 용어 등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4. 6. 5. ~ 6. 25. (20일)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 - 2) 부서협의결과
   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
나) 성별영향평가 : 의견 있음(붙임)
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

나) 경 기 도 : 복지정책과

##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” 을 “위하여” 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적용대상)” 을 “(적용범위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조례의 적용대상은 김포시” 를 “조례는 김포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로, “등으로 한다” 를 “등에 적용한다” 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” 를 “(다른 조례와의 관계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” 를 “관하여 다른 조례에” 로, “없는 한 이 조례로” 를 “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” 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보수가 법률이 정하는” 을 “보수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정기적으로 하도록 하여야” 를 “조사·공표하도록 하여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김포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에 따라 구성한다.

제13조(위원회의 운영 등) 위원회 위원의 임기, 해임·해촉, 회의 등에 관하여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6을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복 지 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 명	복지과장 강 영 화
	팀 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팀장 강 신 준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서기 황 지 희(☎2618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적용대상) 이 <u>조례의 적용대상</u>은 김포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(이하 “사회복지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<u>등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 <u>조례는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등에 적용한다.</u></p>
<p>제4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<u>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</u>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- ----- <u>관하여 다른</u> <u>조례에 ----- 있는 경우를</u> <u>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-----</u> -----.</p>
<p>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<u>보수가</u> <u>법률이 정하는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</u>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보수가</u> <u>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른 -----.</u>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보수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<u>정기</u></p>	<p>제9조(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사</u></p>

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의 실태조사는 「사회보장  
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  
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지  
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 
한다.

④ (생략)

제10조(처우개선 사업 등) ① ~ ④ (생  
략)

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  
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심의·자문  
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  
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설>

<신설>

· 공표하도록 하여야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처우개선 사업 등) ① ~ ④ (현  
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1조(김포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  
선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「사회복  
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  
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제1항 각  
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  
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 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「사  
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 
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에 따라  
구성한다.

제13조(위원회의 운영 등) 위원회 위원  
의 임기, 해임·해촉, 회의 등에 관  
하여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 
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  
4조의6을 따른다.

**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**

**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**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12. 21.]

**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**

**제4조의2(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**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“중앙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 -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  - 나.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  -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4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
  -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 -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  -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[본조신설 2022. 6. 14.]

**제4조의3(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·해촉)**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[본조신설 2022. 6. 14.]

**제4조의4(중앙위원회의 회의 등)**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1.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2.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
  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
-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제4조의2,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6. 14.]

**제4조의5(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**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
나.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
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

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
4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[본조신설 2022. 6. 14.]

**제4조의6(지역위원회의 운영 등)**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, 해임·해촉,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,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중앙위원회”는 “지역위원회”로,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은 “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본다.

② 제4조의5,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6. 14.]

**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업“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사회복지법인“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3. “사회복지시설“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4. “사회복지서비스“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, 재활, 직업 소개 및 지도,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사회복지사 등“이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대상)**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김포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(이하 “사회복지기관“ 이라 한다)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**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시장의 책무)** 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“ 이라 한다)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법률이 정하는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사회복지기관의 책무)**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)**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 질병 및 명백한 위법·부당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,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.

**제8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

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
3.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
4.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
5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9조(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보수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실태조사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 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0.31>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,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처우개선 사업 등)**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2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3.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지원 사업
4. 사회복지사 등과 관련된 「근로기준법」 위반 실태조사 사업
5.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
6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·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(개정 2014.12.26., 2021.7.2.)

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 등에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되는 자에게 「김포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24A 경기김포048									
정책명	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									
소관부서	기관명	경기도 김포시								
	부서명	복지과								
	담당자명	황지희	전화번호 031-980-2618							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4년 6월 4일							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복지과)	○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김포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, 운영 등 기준 마련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									
	가.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- 목적조항의 관계 법령 규정 정비(안 제1조) -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반영 규정 삭제(안 제9조제3항) 나.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등 신설(안 제11조 ~ 제13조) 다.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							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							
	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(위원회의 구성)와 관련하여,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 사항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해야 함을 제시함.									
	<table><thead><tr><th>구분</th><th>해당 내용 (제 개정 법령안)</th><th>개선안 (법령 수정안)</th><th>검토사유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1</td><td>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에 따라 구성한다.</td><td>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에 따라 구성한다. 위촉직 위원의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 &lt;신설&gt;</td><td>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</td></tr></tbody></table>	구분	해당 내용 (제 개정 법령안)	개선안 (법령 수정안)	검토사유	1	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에 따라 구성한다.	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에 따라 구성한다. 위촉직 위원의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 <신설>	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	
구분	해당 내용 (제 개정 법령안)	개선안 (법령 수정안)	검토사유							
1	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에 따라 구성한다.	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에 따라 구성한다. 위촉직 위원의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 <신설>	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							

검토의견  
반영계획서

2024년 6월 17일 까지

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

2024년 06월 07일

김포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 
(담당자/연락번호 : 배정민/031-980-5582)

복지과장 귀하